

Legal Update

2024년 7월

공고일	제목	법령	유형	관할 관청	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	입법 예고 종료일	시행일	관련 부서
7/1	202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	조사	공지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➢ 공정위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제조·용역·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함.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,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임.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,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, 납품단가 조정협의,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임.</p> <p>조사내용: ▲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현황(신설), ▲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, ▲하도급대금 지급, ▲기술자료 요구, ▲거래관행 개선도</p>	6/28~ 7/31	-	Finance HR, SC Sales, IT, Value Stream
7/8	워너비데이터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	심결	결과 (공지)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,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(행위중지명령, 향후금지명령, 공표명령)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.</p> <p>➢ 신규판매원을 모집할 때,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추천 수당으로 구좌 당 5~10만 원을 지급</p> <p>➢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하면 신규 판매원이 납부한 가입비 11만 원의 70%를 기존판매원에게 영업수당(판매원 추천 영업 수익)으로 지급하였고, 하위 판매원이 총수익의 30%를 샘플 구매 비용으로 납입하면 그 금액의 70%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(장려금 수익)으로 지급*</p> <p>[참고사항]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33 조에 따르면 가입비 명목의 법정 한도 금액은 1만 원이며, 판매 보조 물품 구입 명목의 법정 한도 금액은 3만 원임.</p>	-	7/2	Sales

7/22	전자상거래법 개정안	시행령 ·시행 규칙	입법 예고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(일명"다크패턴")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시행(25.2.14.)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유형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28 331 1666 715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규제 내용</th> <th>해당 조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작위의무</td> <td>① (숨은갱신)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</td> <td>제13조제6항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부작위의무</td> <td>② (순차공개가격책정)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·광고하는 행위 금지</td> <td>제21조의2제1항제1호</td> </tr> <tr> <td>③ (특정음선사전선택)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</td> <td>제21조의2제1항제2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</td> <td>④ (잘못된 계층구조) 선택항목의 크기·모양·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</td> <td>제21조의2제1항제3호</td> </tr> <tr> <td>⑤ (취소·탈퇴방해) 소비자의 취소·탈퇴 방해 행위 금지</td> <td>제21조의2제1항제4호</td> </tr> <tr> <td>⑥ (반복간섭)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</td> <td>제21조의2제1항제5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규제 내용	해당 조항	작위의무	① (숨은갱신)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	제13조제6항	부작위의무	② (순차공개가격책정)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·광고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1호	③ (특정음선사전선택)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2호		④ (잘못된 계층구조) 선택항목의 크기·모양·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3호	⑤ (취소·탈퇴방해) 소비자의 취소·탈퇴 방해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4호	⑥ (반복간섭)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5호	7/18~8/27	-	IT, MKT
구 분	규제 내용	해당 조항																								
작위의무	① (숨은갱신)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	제13조제6항																								
부작위의무	② (순차공개가격책정)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·광고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1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(특정음선사전선택)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2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④ (잘못된 계층구조) 선택항목의 크기·모양·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3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⑤ (취소·탈퇴방해) 소비자의 취소·탈퇴 방해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4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(반복간섭)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	제21조의2제1항제5호																								
7/23	소비자기본법	시행령	공포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「소비자기본법」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,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<u>물품 등의 거래·가격·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,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하였고,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함.</u> <p>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.</p>	-	8/14	CC, Value Stream, Sales																		
7/30	공정거래법	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	국무회의 통과	공정위	<p>■ 주요내용</p> <p>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(24.2.9)에 따른 후속조치로 <u>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,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/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음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함. ➢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,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 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,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 하자는 	-	8/7	Legal																		

					<p>사회.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한이 10 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함.</p> <p>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함.</p>			
--	--	--	--	--	---	--	--	--